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29호 2015년 4월 3일(금)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2

공 고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조양동 (주)이에스종합건설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 (주)이에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정현
 - 나. 주 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3. 사업위치 : 속초시 조양동 산27-7 외 26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5,936㎡ ○ 대지면적 : 11,068㎡ ○ 건축연면적 : 31,384.8258㎡ ○ 건설규모 : 아파트 2/18층 이하 3개동 230세대 외 부대·복리 시설 	52,699,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4. 04 ~ 2017.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붙임1>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붙임2>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033-639-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1]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	증) 15,936	15,936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시 지구 단위계획 의제처리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결정내용	변경내용
신설		속초시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지구를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 •면적 : 15,936㎡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 1만㎡ 이상의 주 택건설사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936	-	15,93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936	-	15,936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	20	보 조 간선도로	2,645	대로1-3 조양1292-14도	대로1-6 조양558-24천	일반 도로	1987.2.17	
변경	중로	1	8	20~ 22.5	보 조 간선도로	2,645 (24)	대로1-3 조양1292-14도	대로1-6 조양558-24천	일반 도로		폭원확장
기정	중로	3	13	12	보 조 간선도로	658	대로1-2 조양1410-27전	대로1-1 조양1304-1	일반 도로	1981.7.20	
변경	중로	3	13	12~ 17	보 조 간선도로	658 (214)	대로1-2 조양1410-27전	대로1-1 조양1304-1	일반 도로		폭원확장

※ ()는 구역내 연장

■ 도로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8	중로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확장 - 폭원 : 20→20~22.5m(증2.5m) - 연장 : 2,645m(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입동선 확보를 위한 감속차로 설치
중로3-13	중로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확장 - 폭원 : 12→12~17m(증2.5~5m) - 연장 : 658m(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어린이공원	조양동 산27-7일원	1,620	-	1,620	강고 제87-12호 (87. 2. 21)	

■ 어린이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20	896	-	-	시설율 : 55.3%(기준 : 60%이하)
도로 및 광장	346	346	-	-	평의자 5개소
휴 양 시 설	207	207	-	-	파고라 1개소
유 희 시 설	343	343	-	-	놀이시설 2기, 파고라 1개소
녹 지	724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구 분	도면표시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총 계		15,936	100.0	
공 동 주 택 용 지	A	11,068	69.8	
도 로 용 지	B	3,087	19.0	
녹 지 용 지	C	1,781	11.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15,936			15,936	
A	11,068	1	속초시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11,068	• 공동주택용지(1가구 1획지) • 필지 합병후 공동주택 건립
B	86	1	속초시 조양동 1377-88번지 일원	86	• 중로 1-8호선(기부채납)
	3,001	2	속초시 조양동 1340-1번지 일원	3,001	• 중로 3-13호선(기부채납)
C	1,620	1	속초시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1,620	• 어린이공원(기부채납)
	161	2	속초시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161	• 법면녹지(기부채납)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용 도	권장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00%	
		용 적 률		215.00%	
		높 이		18층 이하	
		배 치		관상형	배치계획도 참고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붙임2]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 : 속초시 조양동 1330-1번지외 26필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사업

○ 명 칭 : 조양동 도시계획시설(중로1-8호,중로3-13호,어린이공원 16) 사업

다. 사업규모

위 치	구분	결정규모	금회시공	비고
속초시 조양동	중로 1-8호선	2,450m	42.2m	
	중로 3-13호선	658m	221.1m	
	어린이공원 16	1,620㎡	1,62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의 명칭 : 주식회사 이에스종합건설

- 법인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정현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37번길 5, 103동 303호(일곡동)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즉시

위 치	구분	금회시공	기부채납 대상	비고
속초시 조양동	중로 1-8호선	42.2m	42.2m	
	중로 3-13호선	221.1m	221.1m	
	어린이공원 16	1,620㎡	1,6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한 요건 제외 대상.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 : 속초시 조양동 1330-1번지의외 26필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사업
- 명 칭 : 조양동 도시계획시설(중로1-8호,중로3-13호,어린이공원 16)사업

다. 사업규모

위 치	구분	결정규모	금회시공	비고
속초시 조양동	중로 1-8호선	2,450m	42.2m	
	중로 3-13호선	658m	221.1m	
	어린이공원 16	1,620㎡	1,62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의 명칭 : 주식회사 이에스종합건설
 - 법인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정현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37번길 5, 103동 303호(일곡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04월(허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 03월 30일

바. 인가조건 : 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 무상귀속 대상

위 치	구분	금회시공	무상귀속 대상	비고
속초시 조양동	중로 1-8호선	42.2m	42.2m	
	중로 3-13호선	221.1m	221.1m	
	어린이공원 16	1,620㎡	1,620㎡	

⇒ (주)이에스종합건설 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 기부채납계획

※ 그 외의 사항 별도 인가조건 참고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중로1-8, 중로3-1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조양동	1330-1	전	25	25	속초시				
2	조양동	1340-1	대	440	440	속초시				
3	조양동	1340-2	대	32	29	이에스종합건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4	조양동	1350-5	대	79	79	속초시				
5	조양동	1351-1	대	87	87	속초시				
6	조양동	1351-2	임	291	47	이에스종합건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7	조양동	1351-3	임	75	62	속초시				
8	조양동	1351-4	임	17	17	속초시				
9	조양동	1351-5	임	539	539	속초시				
10	조양동	1351-6	임	9	9	속초시				
11	조양동	1352-2	대	69	69	속초시				
12	조양동	1352-24	대	73	26	속초시				
13	조양동	1352-26	대	73	73	속초시				
14	조양동	1352-27	대	2	2	속초시				
15	조양동	1352-28	대	1	1	주정녀	속초시 조양동 1352-9			
16	조양동	1352-29	대	190	190	속초시				
17	조양동	1352-30	대	118	118	속초시				
18	조양동	1352-31	대	26	26	속초시				
19	조양동	1366-1	도	4,505	128	속초시				
20	조양동	1377-88	임	1,372	65	국(국방부)				
21	조양동	산24	임	397	264	속초시				
22	조양동	산27-7	임	13,521	223	이에스종합건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23	조양동	산27-31	임	172	62	속초시				
24	조양동	산27-32	도	2,650	232	속초시				
25	조양동	산27-35	임	109	109	속초시				
26	조양동	산27-36	임	284	284	속초시				
27	조양동	산27-37	임	42	42	속초시				
계	27필지			25,198	3,248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어린이공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조양동	산27-7	임	13,521	1,620	이에스종합건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43			
계	1필지			13,521	1,620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예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에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4조, 제5조)
-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구성 :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 기능 : 지방보조금 편성,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유지여부 등 심의
-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지방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의무(사업계획서 포함)
 - 시장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검토후 교부결정서 발급

- 보조사업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 지방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및 실적보고 의무
 - 시장 : 성과평가 매년실시, 지속사업은 3년마다 위원회 심의거쳐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금 용도의 사용금지 및 교부결정 취소,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지방보조사업자 : 법령, 교부결정서, 시장의 처분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의무
 - 시장 : 교부현황 및 평가결과,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변동사항 등 공시 의무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3조, 제34조)
 - 교부 제한 (5년범위) : 용도의 사용 또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시
 - 이의신청(20일 이내) : 교부결정 취소 등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예산경영담당
(전화 : 033-639-2113, FAX : 033-639-210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예산경영팀(033-639-2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 보조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인이 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

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서(제2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

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

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
2.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중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로 한다.

④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
다.

⑤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
다.

⑧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⑨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속초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⑰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28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17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 중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속초시 해오미 속초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속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속초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사업계획서

1. 주사업의 개요

○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

○ 산출기초 :

4. 경비의 사용방법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단 체 활 동 실 적(최근 1년 이상)

사업명	활 동 내 용	비 고
○○○	○ ○ ○ ○ ○	※사업 성격 및 일자순으 로 전체 기 재함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